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가설구조물 조립 등 위험작업 시 자격 등 확인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다음의 각 법령에 따라 가설구조물(비계·거푸집·흙막이 지보공)의 조립 및 해체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일정한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(이하 '자격 등')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작업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.
가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0조(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) 제1항
나. 「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및 [별표 1]
3. 특히, 일용근로자가 많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은 작업자가 소위 '보조공'이라는 명목으로 자격 등이 필요한 유해·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4. 이에, 귀 기관에서는 소속 회원 건설사에게 가설구조물의 조립 및 해체 등 유해·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 및 전파를 요청드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,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



주무관

박승현

시설연구관

민병윤

과장

전결 2024. 2. 27.

이경근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재예방정책과-756

(2024. 2. 27.)

접수

우 30148

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(산업안전보건본부)

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8940

팩스번호 044-862-8076

/ parksh46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